

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(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	지정기준	비고
시설	- 사무실 - 교육장(수용인원 20명 이상) - 염전 - 가공시설 - 교육시설 - 프레젠테이션 1세트 - 염도 측정기 1대 이상 - 수분 측정기 1대 이상 - 미네랄 성분 등의 분석 장비 4종 이상	- 교육장은 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과 같은 장소에 있고 공동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 - 염전 및 가공시설은 임대 가능
인력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천일염 관련 연구·교육 또는 지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농림·환경·식품·수산·화공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농림·환경·식품·수산·화공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농림·환경·식품·수산·화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농림·환경·식품·수산·화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·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	교육인력은 교육일정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임이 가능